

建築行政相談

建築行政相談

서울시지부편

본행정 상담은 서울시지부에서 항시 접수처리되고 있으니 많은 애용을 바랍니다. 72-7685

<p>1978년 8월 1일 (화)요일 상담자주소, 신청자성명</p>	<p>서울시 : 건축사 :</p>
<p>상담요지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민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사무실허가를 득하였는데 1층 증축이 가능합니까? 2. 시민 건축허가시 건축주의 주민등록표 첨부 여부. 3. 시민 건축주가 외국으로 이주하였는데 그분의 인감증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4. 시민 연립주택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5. 회원 연립주택 300평 미만 건축 가능한지요? 6. 회원 옥외 주차장의 비율은 어떻게 정합니까? 7. 회원 연립주택의 건폐율과 용적율은? 8. 회원 2종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규모제한은? 9. 시민 주택채권에 대해서 지하실의 면적도 주택채권을 사야되는지요. 10. 시민 주거지역의 대지면적 최소는? 11. 회원 자연녹지 지역에서 연립주택 건축이 가능한지요. 	<p>답변내용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무실 증축은 불가합니다. 설계변경도 불가합니다. 2. 접수시 주민등록증은 확인하는 사항으로 이것을 피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 첨부합니다. 3. 주민등록이 없으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1000m² 임. 5. 300평 미만 가능하나 시청 심의를 득하여야 함. 6. 건축 연면적이 10,000m² 이상인 경우 옥외주차장은 50%이고 10,000m² 미만인 경우는 20%의 옥외주차장을 설치함. 7. 건폐율 40% 용적율 100%임. 8. 건축물 앞면의 길이가 12m 이상. 옆면의 길이가 6m 이상 되어야 함. 9. 주택인 경우 지하실은 채권매입 대상이 아닙니다. 10. 법상 90m²로 되어있으나 구청별로 지역을 정하여 90m² 이상이면 되는곳도 있고 165m² 이상이어야만 되는 곳도 있습니다. 11. 연립주택이 가능하나 용적율이 20%이므로 단층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p>1978년 8월 2일 (수)요일 상담자주소, 신청자성명</p>	<p>서울시 : 건축사 :</p>
<p>상담요지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민 잡종지 건축허가 여부(주거지역내) 2. 시민 연면적 3,000m² 이상의 건축허가 관청은? 3. 시민 공정보고서 제출요령? 4. 회원 78년 6월30일자로 건축허가 통제 대상 건물중 병원이 포함되는지요? 5. 회원 연립주택 동당 소정거리 확보는? 6. 회원 연립주택의 지붕을 슬라브로 할 수 있는지요? 7. 시민 이층위에 3층부분 약 3평을 시공하려고 하는데 허가가 여부는? 8. 시민 연면적 얼마면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9. 시민 건축사협회에서 나오는 책중에 건축용어에 대한 책이 있는지요? 10. 시민 착공신고서는 꼭 협회를 경유해야 하는지요? 11. 시민 연립주택 시공시 시공업자 선정여부. 12. 시민 주차 1대의 면적은 얼마나 필요한지요. 13. 시민 주택 40평 이상 허가안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14. 시민 건축법상 주거지역의 대지면적 최소는? 15. 시민 서울시에서 50평이하는 건축허가가 안된다는데 근거는? 	<p>답변내용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00평 이상일 경우 대지로 지목 변경후 건축허가. 2. 서울시에서 시행. 3. 월 2회 허가관청에 제출(서울시 건축행정 시행규칙 참조) 4. 포함되어 있지 않음. 5. 서울시에서는 1.2 M입니다. 서울이의 지역은 1.0 M만큼 확보하시면 됩니다. 6. 서울시에서는 슬라브 지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기와지붕으로 하도록 권장하기 때문에 슬라브로 할 수 없습니다. 7. 신고대상이 될 수 없고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단, 기존건물이 허가당시 위법 사항이 없는 경우 가능합니다. 8. 영 22조 1항에 해당되는 건물을 연면적 1,000m² 이상이면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9. 월간으로 "건축사"만 발행합니다. 10. 경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구청에서 경유하려고 할 경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11. 10세대 이상이면 시공업자 선정해야 함 (서울시의 경우인데면 연적이 825m² 미만이라 10세대 이상이면 선정해야 함) 12. 직각주차로 한 경우 2.5m×6.0m면 됩니다. 평행유차인 경우는 2.5m×7.5m입니다. 13. 지상면적 40평 이상은 허가되지 않습니다(건축 자재파동으로 인화 조치임) 14. 90m²입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4대문 안과 그외 부분적으로 50평이상으로 규제한 지역이 있습니다) 15. 법적으로는 90m² 이상이나 서울시 행정방침에 의해서 50평 이하 절대 불허지역과 관할구청의 주위환경으로 보아 50평 이하도 가능한 지역이 있음.

16. 시민

기외지붕을 슬라브지붕으로 바꾸는 경우 허가 여부
는?

16.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함.

1978년 8월 3일 (목)요일
상답자주소, 신청자성명

서울시 :
건축사 :

상답요지 :

1. 시민
도로확장으로 인하여 대지가 25평 밖에 남지 않았는
데 허가받을 수 있는지요?
2. 시민
APT의 연료를 연탄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3. 회원
연립주택 미관지구 심의는?
4. 회원
철근 Conc의 기초부분의 피복 두께는?
5. 시민
대지형질 변경할 경우 도로의 포장을 해야하는지요?
6. 회원
내화구조의 종류는?
7. 회원
연립주택 10세대인데 심의는?
8. 회원
단독주택 몇평까지 건축 가능한지요?
9. 회원
주요 구조부의 일부가 목조이고 연면적 1,000m²를
넘는 경우 도로관계는?
10. 시민
건축선 밖으로(출입구가 개폐시) 침범했을 때는?
11. 시민
피뢰침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12. 시민
제거식 변소는 우물과 얼마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요.

답변내용 :

1. 법상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서울시에서는 연탄사용을 금하고 있으니 유류로 사
용해야 함.
3. 본청에서 심의합니다.
4. 법상 기초 피복 두께는 6cm입니다. (다만 버림
Con는 제외된 피복 두께임)
5. 형질 변경시 제반조건이 제시되는데로 이행하셔야
하며 포장 및 제반 하수시설, 구조물을 완성하셔야
합니다.
6. 철근cone. 철근 철골 cone 기타 피복이 3cm 이상
된 R. C조와 무근cone. 벽돌 석조등도 내화구조에
해당됩니다.
7. 시청에서 심의받아야 함.
8. 40평까지 가능합니다.
9. 통로폭 3m 이상 되도록 해야 함.
10. 지표면하의 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의 모든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없으며 노면으로부터 3
m 이하에 있어서는 출입구, 창문등의 개폐시라 할지
라도 건축선을 넘어서는 안되며 공공의 통행에 지장
을 주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1. 높이 20m 이상인 건축물에는 피뢰설비를 하여야
한다.
12. 10m 이상 떨어져야 함.

13. 시민(전화)

직통계단이라 하면 어떤 계단을 말하는 건지요?

13. 직통계단은 한 곳에서 연속되는 계단을 말하며 계단의 구조가 일방 통행으로 상승 또는 하강만이 되는 계단은 직통계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1978년 8월 4일 (금)요일
 상담자주소, 신청자성명

서울시 :
 건축사 :

상담요지 :

답변내용 :

1. 시민

정북, 정남, 동서의 옆집과의 소정거리 관계는?

1. 남북은 최고 높이가 8m 미만이면 높이의 $\frac{1}{4}$ 을 경계선에서 피어야 하고 8m 이상은 높이의 $\frac{1}{2}$ 을 피우며, 동서는 처마로부터 30cm, 외벽으로부터 50cm 후퇴하여야 합니다.

2. 회원

실적증명은 어디서 합니까?

2. 서울시 지부에 오셔서 증명을 받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시민

대지가 250평인데 3필지로 분할. 뒷대지가 부지연장으로 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동 대지를 매매한 후 도로부분의 소유권 주장관계는?

3. 도로로 사용키 위하여 분할했을 경우 동 대지를 도로화 하여야 하며 그 대지를 폐지할 수 없습니다. 일단 도로로 된 사도도 공동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4. 시민

돈암동에 37평의 대지를 샀는데 허가 가능여부.

4. 성북구청으로부터 직경 500m 범위내에는 50평 이상 되어야 하고 그외는 27평 이상이면 가능하나 구청장이 주위여건을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50평 이상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5. 시민

본 대지는 북쪽인데 소정거리. 대지경계선 으로부터 피어야 할 거리는?

5. 각 부분 높이로부터 후퇴하여야 합니다. 즉 8m 미만은 그 부분으로부터 $\frac{1}{4}$, 8m 이상은 $\frac{1}{2}$ 후퇴하시면 됩니다.

6. 시민

70년도 준공업지역에 건폐율에 적합하게 시공했는데 현행법에 의한 건폐율에 맞지 않을 경우 증축할 수 있는지요?

6. 현 건폐율은 증축(2층) 부분만 저축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7. 시민

3종 미관지구인데 84평인 경우 허가 가능여부.

7. 서울시에서는 3종 미관지구는 330m²이므로 주위에 집이 있고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180조 4항 완화규정에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8. 시민

서울시 내에 있는 30만평 대지인데 일부가 주차장 정비지구로 되어있는데 그 사유는?

8. 서울시 전역이 주차장 정비지구이므로 주차대수를 정비지구 조례에 맞도록 신청하셔야 합니다.

9. 시민

불실공사를 하여 건물이 일부 도괴된 부분이 있는데 그 보색상 및 감정할 수 있는 길은?

9. 불실공사 부분을 감정하시려면 설계사무소에 의뢰 감정하시면 됩니다.

10. 시민

연립주택의 건폐율과 용적율은?

10. 건폐율 40%, 용적율 100%입니다.

11. 시민

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최대로 몇평까지 가능하지요.

11. 주택의 경우 지상면적 40평까지 가능합니다.

12. 시민

아파트의 전폐율은?

12. 18%~20%입니다.

13. 시민

지붕을 고치려고 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13.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978년 8월 7일 (월)요일
상답자주소, 신청자성명

서울시 :
건축사 :

상답요지 :

1. 시민

연립주택의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답변내용 :

1. 1000m² 이상임.

2. 회원

APT의 인동간거리는?

2. 1.2M 이상임.

3. 회원

연립주택의 대지면적 관계?

3. 연립주택의 대지 최소면적은 1000m² 이상이나 1000m² 미만인 경우에는 시청의 심의를 득하면 허가 가능합니다.

4. 시민

상업지역의 전폐율은?

4. 서울시에서 50%로 규제하고 있음.

5. 시민

건축하려고 하는데 (주택) 대지면적 최소는?

5. 법적으로 대지면적의 최소 한도는 90m² 이상이나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50명 이하 절대 불허지역과 관한 구청의 주위 환경으로 보아 50명 이하도 가능한 지역이 있음.

6. 회원

주거전용 지역에 연립주택건축 가능한지요?

6. 주거전용 지역에 연립주택 불허.

7. 시민

제 3종 미관지구입니다.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7. 서울 시청에서 심의합니다.

8. 시민

주차장을 설치하려는데 통로는 얼마나 높이면 되는지요.

8. 개구부의 높이 2.3m 이상임.

9. 시민

지하실도 주택채권을 사야 하는지요?

9. 지하실(단독주택의 경우)은 주택채권을 아니 사셔도 됩니다.

10. 회원

주차장 설치시 옥내외의 구분은?

10. 옥내는 150m²마다 1대씩, 옥외는 200m²마다 1대씩 계산하면 됨.

11. 회원

APT의 용적율은?

11. 200%임.

12. 시민

주거전용 지역의 전폐율은?

12. 서울시의 경우 40%입니다.

13. 시민

5층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꼭 필요한지요?

13. 법적으로는 5층 이상은 엘리베이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1978년 8월 8일 (화)요일	서울시 :
상담자주소, 신청자성명	건축사 :
상담요지 :	상담내용 :
1. 회원 서울은 150m ² 이상만 공사감리를 합니까?	1. 30m ² 이상 합니다.
2. 회원 강의도의 경우 주택인데 저기는 150m ² 이상 감리가 필요한지요?	2. 서울의 경우 연서제이므로 30m ² 이상은 해당됩니다. 단 강원도의 경우 그 자치단체의 규정을 정하지 않는한 법적 감리에 해당되는 면적에 한하여 하시면 됩니다.
3. 시민 주택을 하나 구입하였는데 지하실에 방이 2개 있습니다. 이것이 위법이라고 서울시로부터 시정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원 건축주가 아니므로 저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아는데요?	3. 시정을 하지 않으면 관에서 고발을 하게되고 위법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므로 시정하셔야 합니다. 시정하시기 위해서는 설계(증축)을 하셔서 허가를 득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위법부분은 철거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원매자에게 말씀드려서 시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 시민 기존건물 1층 30평 2층 27평인데 대지는 57평입니다. 2층에 7평 더 증축이 가능한지요?	4. 기존건물 40평 이상은 10% 증축이 가능하므로 총 44평이 되는데 기존 10%이면 3.7평 증평이 되므로 현재 그 이상은 증축할 수 없습니다.
5. 회원 2층 미관지구에 병원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선 후퇴에 대하여?	5. 병원이면 건축선에서 3m 후퇴하고 지상 연면적 100m ² 마다 1m를 가산하여 후퇴하여야 함.
6. 회원 일층은 점포, 2. 3층은 병원으로 건축 가능한지요.	6. 현재 점포는 허가되지 않습니다.
7. 시민 주거전용 지역의 건폐율은?	7. 40%입니다.
8. 시민 APT의 인동간 거리는?	8. 높이의 1. 2배를 띄우면 됨. (서울시의 경우)
9. 회원 APT의 대지면적 최소 한도는?	9. 3000m ² 임(서울시 경우)
10. 회원 연립주택의 용적율은?	10. 100%입니다(서울시 경우).
11. 시민 미관지구 심의를 어디서 합니까?	11. 시청에서 합니다.

1978년 8월 9일 (수)요일	서울시 :
상담자주소, 신청자성명	건축사 :
상담요지 :	답변내용 :
2. 시민 8.15부터 주택 변천에 대하여 아는데로 말씀해 주십시오.	2. 6. 25 이후 1954년부터 대충보면 그 C. A 주택, 산은 주택, 서울시의 난민 정착지로 철거민주택(남가좌동, 상계동, 구로동)에서 주공의 마포아파트, 창신아파트, 서울시의 연립주택(등촌동) 시민아파트, 주

3. 회원

아파트 건폐율은?

4. 회원

아파트의 용적율은?

5. 시민

기존 2층의 건물에 3층을 증축코저 하는데, 일조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6. 회원

APT의 인동간의 거리는?

7. 시민

용도 변경시 필요한 서류는?

8. 회원

교회건물인데 증축을 하면 주차장 설치도 해야 하는지요.

9. 회원

주거전용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율은?

10. 회원

연립주택의 건폐율은?

11. 시민

지하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12. 회원

옥내에 주차장을 만들수 없는 형편인데 옥외만 설치해도 되는지요.

13. 회원

주거지역의 건폐율과 용적율은?

14. 회원

연립주택 1,500평 시공코저 하는데 시공업자선정은?

15. 시민

풍치지구에 대지 650m인데 분할할 수 있는지요?

16. 회원

연립주택의 건폐율은?

17. 시민

교회를 특수건물로 보는지요?

18. 회원

주차장 설치시 옥내외의 구분?

택은행의 은행주택(산은에서 이관) → 아파트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이 계속되다가 대단위 개인주택 등으로 하여 오늘의 일반아파트로 된것 같습니다.

3. 18~20%입니다.

고층 APT는 18%이고, 저층 APT는 20%입니다. 고층은 5층 이상 저층은 3-5층을 이야기 합니다.

4. 200%임.

5. 증축부분은 현법에 맞추어 적용해야 함.

6. 높이의 1.2배임.

7. 신청서, 변경전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가 필요하여 기타법적인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8. 현재 주차장이 없는 경우 증축을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하면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나 증축을 하면 그 전체 면적에 대하여 주차장을 설치해야 함.

9. 건폐율 40% 용적율 60%임.

10. 건폐율 40%임.

11. 지하실은 허가 사항입니다.

12. 옥외에만 설치해도 됨.

13. 서울시의 경우 50%의 건폐율과 용적율 200%임.

14. 특수건물 825m² 이상은 시공업자 선정요함.

15. 풍치지구에서 700m²이 대지면적 최소한도 이므로 분할 불가함.

16. 40%입니다.

17. 교회는 특수건물로 봅니다.

18. 옥내는 159m² 당 1대 옥외는 200m² 당 1대씩 산정해야 함.

1978년 8월 10일
상담자주소, 신청자성명

(목)요일

서울시 :
건축사 :

상담요지 :

답변내용 :

1. 회원
APT건축에 있어서 1층에 점포를 겸해서 건축허가 여부.
2. 회원
APT의 전폐율은?
3. 회원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APT를 건축하는 경우. 전폐율 관계는?
4. 회원
교회를 건축하고자 하는데 주차장 설치를 해야 하는지요?
5. 회원
APT의 대지 면적 최소 한소는?
6. 시민
주택에서 처마끝과 대지경계선과의 거리는?
7. 회원
영동 주거지역의 전폐율은?
8. 회원
옥내외 주차장의 비율은?
9. 시민
공정보고서 제출요 하는 건물의 규모는?
10. 시민
연립주택의 용적율은?
11. 시민
주거전용 지역의 대지면적 최소는?
12. 회원
생산녹지 지역의 전폐율과 용적율은?

1. 서울에서는 복합건물은 불가하며 단지내 별도의 점포를 건축하여야 합니다.
2. 서울의 경우 18%~20%입니다.
3. 서울시의 APT전폐율 일률적으로 18~20% 이나 공업지역 내에서는 APT를 시공할 수 없습니다.
4. 교회는 집회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차장을 설치해야 함.
5. 3000m²임.
6. 주거지역인 경우 0.3m 띄면 됨.
7. 40%임.
8. 연면적 10,000m² 이상인 경우 옥외주차장을 50% 이상,
연면적 10,000m² 이하인 경우 20% 이상 설치요.
9. 30m² 이상의 건물은 모두 공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10. 100%입니다.
11. 200m²입니다.
12. 전폐율 20%
용적율 150%입니다.

1978년 8월 11일
상담자주소, 신청자성명

(금)요일

서울시 :
건축사 :

상담요지 :

답변내용 :

1. 시민
지하실을 증축코저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2. 시민
풍치지구 지정 이전에 분할된 대지로서 290 m² 인데 전폐율은?

1. 허가 받으셔야 함.
2. 풍치지구 지정 이전에 분할된 것이면 $\frac{4}{10}$ 이므로 116m²까지 건축 가능합니다.

3. 시민 연립주택의 전폐율과 용적율은?	3. 전폐율 40% 용적율 100%임.
4. 회원 주거전용 지역의 전폐율은?	4. 40%임.
5. 시민 주택 36평입니다. 주택채권은 얼마나 사야 합니까?	5. 평당 4,000원씩입니다.
6. 회원 APT와 점포를 한동에 건축할 수 있는지요?	6. 복합건물 허가 안됨.
7. 회원 연립주택 인동간의 거리는?	7. APT에 준하여야 하므로 높이의 1.2배가 됨.
8. 회원 건설업자 선정 한계는?	8. 특수건물은 825m ² 이상, 일반건물은 1125m ² 이상임.
9. 회원 풍치지구 전폐율에 대하여	9. 대지 300m ² 까지는 $\frac{4}{10}$ 300~500 $\frac{2}{10}$ 500초과 $\frac{1}{10}$ 이상 전폐율은 풍치지구 지정 이전에 垆地화 되어 있는 경우의 전폐율입니다.
10. 시민 풍치지구 소정거리 관계는?	10. 1층은 양측면 1.5m 이상 후면 1.5m 이상 띄어야 하고고 2층은 양측면 1.5m 이상 후면 2.0m 이상이어야 하며 건축선으로부터는 2.5m 1. 2층 같이 띄어야 함.

1978년 8월 14일 (월)요일	서울시 :
상담자주소, 신청자성명	건축사 :
상담요지 :	답변내용 :
1. 회원 Green Belt 내 고등공민학교의 15평 내외의 부대시설(변소, 숙직실) 증축이 가능한지?	1. 그건Green내의 국민학교, 중학교의 증축이외의학 교증축은 가.
2. 회원 연립주택의 축간의 인동간격은?	2. 4m임.
3. 회원 각 구청마다 건축심의 신청서식이 다른데 옳은것은?	3. 통일된 서식으로 사용토록 시정건의 하겠음.
4. 시민 기존건축물(35평)에 (주택채권을 이미 소화함) 30평을 다시 증축할 경우 주택채권 소화액?	4. (30평+35평-지하실 면적) × (해당 평수에 대한 금액) -전에 소화한 채권액 예시 : 지하실을 감한 면적이 55평이라면 55평 × 평당 15,000원 -기허술화액 채권액 (35×4,000원)
5. 시민 성수동 준공업 지역내 공장증축 허용범위는?	5. 기존 연면적의 $\frac{1}{2}$ 범위내 시청(전층지도과)에 신청 신청서류 •승인 신청서 •대지증명 •기존 공장현황도

• 사업계획

전폐율은 50% 초과되지 않도록 한것.

6. 회원

미관지구내 의장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6. 77. 11. 10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의장 변경 대수선의 범위내에 포함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허가를 받아야 함.

• 제출로서는 의장변경 내용을 표시하는 최소한의 도서만 제출함.

• 미관심의를 필한것.

7. 회원

같은 대지내 점포와 주택을 별동으로 건축하는 경우에 띄어야 하는 거리는?

시행령 제167호 제3항 규정에 적용하는지?

7. 시행령 제 167로 제 3항 규정은 아파트 등(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병원 등)에 한하여 적용토록 되어있으므로 본건의 경우는 동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질의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음.

다만 건축법 제13조의 채광상 유효한 면적의 산정방법을 유의한것.

8. 회원

태양열주택의 건축허가?

100평 주택도 가능한지?

8. 정부에서 태양열주택의 권장을 위한 특혜 규정을 논의하고 있는 모양이나 현재까지는 시달된 지시가 없음(현재는 건축불가)

9. 회원

경기도의 경우 아파트건축물의 전폐율?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도로가 접해있는 경우는?

9. 따로 정한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음.

남북방향과 건물 전후면 방향으로는 건물높이의 1/2 이상을 띄우되 도로가 있을 경우는 도로의 맞은편 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산정.

10. 시민

구획정리 지구내 대지 600평인데 연립주택건축 가능한지?

10. 가능함.

11. 회원

마포구 용광동 미확정지구인데 건축허가 가능한지요.

11. 도로로 넓히기 위한 도시계획 입안 예정지구(미확정)일 때는 결정고시 및 지적고시 전에는 건축허가 안됩니다.

再版

• 建築計劃決定方法

著者: 漢陽工大教授·工博 金眞一

洋裝284面 값 3,500원

改正版

• 要点建築計劃

洋裝266面 값 3,500원

發行 普成文化社

總販 良友堂(74. 4292)